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7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2

I. 제안경위

2026년 6월 24일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Ⅲ. 검토의견

1.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각각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 ----- <u>500만원</u> ----- 1. ~ 6의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 ----- <u>200만원</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u>2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u>100만원</u>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일종으로 행정질서벌이자 금전벌에 해당함¹⁾.

현행법은 위반한 법률 조항과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200만원, 50만원, 2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 법 제86조]

금액	부과 사유
200만원 이하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50만원 이하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만원 이하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0만원 이하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최근 국립공원 탐방객 수와 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원 내 쓰레기 관리와 무단 투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1) 「법제 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5. p.804

[연도별 국립공원 탐방객 수]

(단위: 천명)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7,289	33,899	36,623	37,124	38,456	41,187

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오동도(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치는 제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연도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

(단위: 톤)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440.07	831.34	885.42	886.68	911.12	925.51

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오동도(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치는 제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특히, 오물이나 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과 비교할 때²⁾ 법정 과태료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재 수준의 형평성과 규범적 경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태료의 상한을 각각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2)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③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 법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연공원 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규범적 경고 기능을 높이고 자연공원 보호 의무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상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연공원의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인데, 각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상향의 필요성과 인상 수준의 비례성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 상향과 함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모두 상향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법 제86조제3항에서 제27조제1항제11호(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출³⁾하였으므로 심사에 참

3) 이외의 내용은 현행법상 상한을 유지하는 입장임.

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과태료 상한을 법률에서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제 부과금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시행령 [별표]는 유형별 단일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4),

향후 개정될 시행령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과 같이5)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5)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	70	100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	15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이하 생략)		20	20	2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이하 생략)		100	100	10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41
